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6. 8(수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6. 8(수) 14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
담당과장	강완구 과장 (2150-5450)	담당자	고상진 사무관(2150-5453)

제목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(안) 입법예고 - FTA,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등

□ 기획재정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(안)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('11.6.8~6.23) 및 입법예고('11.6.13~7.4) 절차를 수행함

- 동 개정안은 한-EU FTA, WTO 정부조달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,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,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·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·허가 협의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임

□ 개정(안)의 주요내용

① FTA,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

-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, 개방 대상 기관 및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거나 또는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,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함
- 국제협정 적용대상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 대상·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

② 인·허가 등의 의제제도 개선

- 인·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·허가 협의기간을 단축(30일→20일)하고,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·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함

- 금번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(안)은 관계기관 의견수렴,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

<첨부>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< 첨 부 >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일부개정(안) 주요내용

2011. 6.

**기 획 재 정 부
재 정 정 책 국**

< 목 차 >

I. 추진배경	1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II. 주요 개정내용	2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

1.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및 원칙 규정 마련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이의신청 절차 마련	4
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인·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추진배경

□ FTA,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

- **(현황)**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,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*

* 기 발효('04.4.1)된 한-칠레 FTA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조달의 일종으로 포함하여 개방하였기 때문에 기 국제협정 적용규정 등 마련 필요

- **(문제점)** 한-EU FTA, 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시 민간투자법에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규정 불비 문제점 발생
- **(개선)** FTA,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,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

□ 인·허가 등의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

- **(현황)**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*하여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계된 법률에서 정한 인·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
*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,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

- **(문제점)**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, 문서에 의존하는 협의 등 실질적인 인·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*

* 법령상으로는 인·허가 의제가 성립되었으나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

- **(개선)** 인·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인·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·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*

*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('11년 규제개혁 100대 핵심과제)

II. 주요 개정 내용

①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및 원칙 규정 마련

□ 개정 이유

- 기 발효되거나 체결·발효될 국제협정*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협정내용에 따라 외국업체 참여를 허용하여야 함

* 한-칠레 FTA('04.4.1 발효), 한-EU FTA('10.10.6 서명, '11.5.4 국회통과), 한-미 FTA('10.12.3 추가협상 타결), WTO 정부조달협정('11연말 서명예정)

-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

- 국제협정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점을 감안 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범위 및 원칙 등을 규정할 필요

□ 개정내용(제3조의2 신설)

◇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

- 적용범위 중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, 대상금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
-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

- ① (협정적용 범위)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기 체결되거나 체결될 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에* 대한 위임 근거규정 마련

- (주무관청 범위) WTO 정부조달협정, 한-미 FTA, 한-EU FTA 등 각각의 국제협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이*,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**

* 한-미 FTA : 국가, 한-EU FTA : 국가, 광역지자체, 서울·부산·인천·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, WTO 정부조달협정 : 국가, 광역지자체

** 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 관계규정을 마련('97.1)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경우도 대통령령에 규정

- **(대상금액)** 각각의 국제협정에 따라 대상금액이 상이*, 2년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대상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**재정부 장관이 고시할 필요 ****

* 한-미 FTA : 500만 SDR(95억원), 한-EU FTA : 1,500만 SDR, WTO 정부조달협정 : 국가 500만 SDR, 광역지자체 1,500만 SDR

※ SDR(Special Drawing Rights) :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
1SDR = 1,890.16원

** 국가계약법의 경우도 환율 변경에 따라 재정부장관이 2년마다 고시

② **(국제협정 원칙)**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**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**을 민간투자법에 반영

- WTO 정부조달협정, 한-미 FTA, 한-EU FTA 등 모든 협정에서 천명*하고 있는 원칙으로 민간투자법에 반영할 필요

* WTO 정부조달협정, 한-미 FTA : 협정문 제3조, 한-EU FTA : 별도부속서

② 이의신청 절차 마련

□ 개정이유

- 기 발효되거나 체결·발효될 **국제협정***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**이의신청 처리절차**를 마련하여야 함

* WTO 정부조달협정, 한-미 FTA : 협정문 제3조, 한-EU FTA : 별도부속서

□ 개정내용(제44조의2 신설)

- ◇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(‘10.5.28, 국회 제출)에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

① (대상) 국제협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대상

- ① 국제협정의 적용범위 관련사항(신설 제3조의2 관련)
- ② 공고에 관한 사항(시설사업기본계획, 제3자공고)
- ③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(이의신청절차 도입) 국제협정상 주무관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의 허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나

- 분쟁 조정신청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하여 단기일내에* 분쟁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필요성이 인정됨

*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통지(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, 추가로 60일 연장가능)

③ (분쟁조정신청과 선택적 적용) 사업시행자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

- 다만, 이의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**재심 청구**가 가능하도록 함

※ 국가계약법령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이의신청을 한 후 재심청구 절차로만 가능(국가계약법 제28조, 제29조)

③ 인·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

□ 개정이유(국경위 규제개혁과제)

-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·허가 의제제도를* 운영하고 있으나

*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-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-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

-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고, 형식적 문서에 따른 협의방식 등에 인·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

□ 개정내용(안 제17조 개정)

◇ 인·허가 협의기간 단축(30일→20일) 및 인·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·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

- ① (협의기간 단축) 주무관청의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인·허가 의제처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
- ② (인·허가 협의체 구성) 관계기관과의 협의시 현행 문서위주로 협의하던 것을 일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하고,
 - 협의 기관은 소속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도록 함